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학원 운동의과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 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운동의과학과 소속 교수들은 운동의과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논문지도

제4조 (지도교수의 선정)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에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원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변경사항은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5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학술 연구재단 등재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 논문게재 시 석사 2과목 및 박사 4과목을 면제한다.

제6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이며,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며,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제5장 학위과정

제8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은 학위논문으로 한다.

제9조 (석사학위 과정 취득 자격요건) 학위논문의 경우 33학점 이수(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및 평균 80점 이상으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제10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 경 한다.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1조 (학위논문의 심사)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자격시험 → 학위논문작성 → 예비심사 → 본심사 → 통과

제12조 (예비발표) 학위논문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위청구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 이 경우 재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그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한다.

제13조 (논문심사위원) 석·박사 과정 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며,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참석 하에 진행한다.

제14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학위논문 대체 자격이 별도로 없다.

제15조 (논문대체 제출) 학위논문 대체 자격이 별도로 없다.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6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1] 종합시험 면제

응시과목수	시험 면제 조건		면제과목수
석사 2과목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교신저자,	석사 2과목 박사 4과목 면제
박사 4과목	학술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제1저자	석사 2과목 박사 4과목 면제